

제정 2022. 05. 17

협력사 행동강령

2022. 05. 17

GS 건설 주식회사

1. 제정목적

GS 건설은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이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하는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한다.

GS 건설은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GS 건설의 지속가능한 경영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정책적용범위

GS 건설은 사업 수행의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3.1 자발적 근로

- GS 건설 협력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 GS 건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3.2 미성년 근로자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 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3.3 근로시간 준수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연장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3.4 임금 및 복리후생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3.5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도적 처우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 체벌과 욕설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는다.

3.6 차별금지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에서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7 인권 침해 방지 절차 마련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4.1 산업안전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2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계획, 실행, 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3 산업위생과 보건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4 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준수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한다.

4.5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환경

5.1 환경법규의 준수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동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5.2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에너지 및 용수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5.3 환경오염 방지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6. 기업윤리

6.1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6.2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6.3 개인정보보호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6.4 협력업체와의 상생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6.5 지역사회 공헌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7. 경영시스템

7.1 리스크 점검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7.2 규범 준수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GS 건설이 지정한 제 3 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3 교육 및 소통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강령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7.4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GS 건설의 협력회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2. 5. 17 부터 시행한다.